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취업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35세”를 “39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지원 기준 조정에 따른 적용례)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5조(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)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15조(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) ① -----		
1.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		1. -----		
가.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될 것		가. -----		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		나. -----		
2.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정한 자녀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일 것		2. -----		
② ~ ④ (생략)		-----39세-----		
	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731